

구조물 하자의 평가 및 법적책임

Liability and Assessment of the Defects in a Completed Structure



이태형 국제 위원장
(주)전우구조 대표이사

Tony Gee and Partners 한국지사장

1. 서론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건설공사의 하자는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즉, 도로, 교량, 항만, 상하수도 시설, 건축물 등 사회 간접 시설물의 하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와우아파트 (1970), 창선대교 (1992), 신행주대교 (1992), 우암상가 (1993), 성수대교 (1995), 삼풍백화점 (1996) 등 일련의 구조물 붕괴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의 계속된 붕괴사고를 겪은 후, 정부는 구조물 붕괴사고를 방지하고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관련법을 보완 하고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회계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 건설촉진법 상 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설하거나 연장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과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 공사수급인이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나, 개개의 구조물이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발주자, 건축사, 기술사, 감리자, 시공자, 전문공사업자, 기자재공급자 및 유지 관리자 등 여러 공사 관계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사 목적물을 완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산업의 이와 같은 복잡한 생산체계 하에서의 구조물 붕괴를 포함한 구조물 하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 규명이 용이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구조물 하자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구조기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형법을 제외한 민법 및 건설관련법상 설계 및 기술용역 도급 계약에 따른 구조기술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건설공사와 구조설계·기술용역

건설공사라 함은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¹⁾ 설계 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험·평가 및 자문에 관한 기술로서 설계도서로서 구체화되는 전문기술을 말한다.²⁾

3. 설계용역 수급인(으로서 구조기술자의 법적 지위

구조설계자라 함은 본인의 책임 하에 구조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의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지도·자문하는 전문가이며, 기술사(PE)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³⁾

기본적으로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공학사 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건설관련법규에 규정된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만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4. 구조설계 기술용역 도급계약의 특성

구조설계 용역 도급계약은 구조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위한 설계 도서의 완성을 약속하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이며 낙성불요식계약이다.

이러한 구조설계 용역 계약은 전문가의 책임과 관련한 위임 계약으로 분류되거나⁴⁾ 공사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급부의 성질 상 정보제공 계약으로 분류되기도 하며⁵⁾ 대법원 판례 또한 '수급인이 도급인의 의도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도급인이 의도한 공사 목적을 이루게 하는 계약은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⁶⁾

또한 총액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경우 개개의 구조기술자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발주자나 시공자의 감독이 없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달려 있으며 발주자는 일의 결과만을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설계 용역 도급 계약은 새로운 형태의 쌍무계약으로 파악되기도 한다.⁷⁾

한편 구조설계도서에 결함이 있을 경우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다루어지며 다른 건설관련 법 상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0조 규정에 따라 완성된 설계도서 인도 후 1년으로 제한되며, 이때 구조설계자는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구조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야기된 인명손상 및 재산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구조물 하자의 정의

하자라는 용어는 건설공사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라 함은 사람이나 물건이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는 상태로, 특정물의 성질 및 품질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와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의 불일치를 물건의 하자라 하며, 물리적 하자, 환경적 하자, 및 권리적 하자를 포함하는 것이나⁸⁾ 본고에서는 건설구조물과 관련된 물리적 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물의 물리적 하자는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으로 시공자나 설계자가 사전에 약정한 특정의 성질과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 즉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⁹⁾, 이때 완성된 구조물과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에 이르지 못한 상태 예컨대 공사의 미완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¹⁰⁾

또한 건설공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생산체계 때문에 완성된 구조물의 하자에 대한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 규명이 용이치 않은 실정인

다.

6. 구조설계 도서의 결함

구조설계자는 본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반면에 공사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 경우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제받게 되며¹¹⁾ 발주자는 공사수급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¹²⁾

7. 부실시공

공사수급인 하자 담보책임의 가장 큰 특성은 도급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한 법적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데 있다.¹³⁾ 공사수급인이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지시에 따라 제대로 공사 하지 않았을 경우, 설계도서 검토 과정 중 명백한 하자를 발견하고도 도급자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적절한 현장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목적구조물과 설계도서간에 불일치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수급인은 이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공사수급인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 미달의 경우, 발주자가 공사 목적물을 인수받은 후 적정하게 유지 관리를 아니 한 경우에 공사수급인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면제받게 된다.

8. 감리부실

감리란 시공자가 공사를 설계도서의 지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리자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것을 말하며¹⁴⁾, 감리자의 업무에는 설계도서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성 여부 검토 등이 포함 된다.¹⁵⁾ 따라서 공사 감리자가 공사 감리 업무를 태만하게 하여 설계도서의 결함에 기인한 공사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조 설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

9. 구조물 하자의 감정 및 평가

최근 건설공사 하자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공사는 시공자, 건축사, 기술사, 자재공급업자, 감리자 등 시행에 관여하는 주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책임 주체에 대한 조정이 복잡하고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나 보증기관도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사용검사 시 사용검사자의 결정에 따라 하자 유무에 대한 최초 판단이 가려지게 되어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대부분의 건설 분쟁은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법원 판결에 의하여 해결되

나, 특별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⁶⁾를 비롯하여 건설 분쟁 조정 위원회¹⁷⁾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¹⁸⁾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도 있으나 이 기구들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인지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10.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¹⁹⁾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조설계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불완전이행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구조설계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발주자는 구조기술자의 전문기술 서비스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²⁰⁾ 불완전 이행의 효과로 발주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와 별도로 완전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 해제도 가능하나 설계용역 도급계약의 경우 과업기간 도과 후 계약해제권 행사는 실익이 없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수급인의 계약위반 시 또는 발주자가 설계도서의 결함을 인지한 날로부터 10년이다.²¹⁾

11. 하자 담보 책임

매도인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570조 및 제66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하자 담보 책임의 특징은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²²⁾ 구조설계자는 설계도서 인도 시부터 담보책임이 발생하며 그 제척기간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각각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설계도서의 결함에 의한 공사 목적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공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고 구조설계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²³⁾

12.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당사자간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²⁴⁾ 불법행위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이고 채무 불이행은 계약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행위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판례는 두 책임이 각각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청구권 경합설을 인정하고 있다.²⁵⁾

한편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²⁶⁾ 의료행위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불법 행위는 공평타당의 이상을 기초로 과실 추정의 법리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가 있다.²⁷⁾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⁸⁾

13. 부진정 연대책임

공사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공동불법행위를 한 공사 관련자는 각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며 공동 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관여도에 해당하는 일부만의 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²⁹⁾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³⁰⁾

14. 결론

구조기술자는 건설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고 전문적 응용능력을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조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업역을 수행함으로써 또한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건설전문가로서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구조기술자에 대한 관련 법규나 학문적 연구성과는 드물다.

구조설계도서의 기능이 건설공사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구조설계자의 임무는 계약에 따라 구조설계도서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조기술자는 하자담보책임, 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의무 그리고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모호한 하자 평가기준, 비전문가에 의한 구조물 하자에 대한 평가, 구조기술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하자 및 설계도서의 결함과의 인과관계 입증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게 된다.

최근에 정부는 공사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관련특별법상 세분하여 최장 10년으로 장기화하였으나 이는 공사수급자와 설계용역 수급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지우는 규정으로 구조기술자의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기간을 구분하여 무과실

책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2년으로 단축하고 과실에 따른 책임은 그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되 하자 평가 기준 및 분쟁조정기구를 정비하여 공사관계자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수 보증 보험 및 전문가 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의 적용은 신중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건설공사 하자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
-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항
- 3) 기술사법 제3조 제1항
- 4) 이은영, 「채권 각론 제3판」 (서울:박영사,2000), P569
- 5) 이은영, 前掲書, P549
- 6) 대판 1996.8.23 「96다16650」
- 7) 김형배, 「민법학 강의」 (서울:신조사,1999), P1067
- 8) Cobuild English Dictionary (London:Harper Collins Publishers,1999)
- 9) 신현식, 「건축대사전」 (서울:대우출판사,1991)
- 10) 대판 1997.12.23 「97다44768」
- 1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 12) 대판 1996.5.14 「95다24975」
- 13) 김준호, 「민법 강의 제5판」 (서울:법문사,1999), P1042
- 1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항
- 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13항
- 16) 대한상사 중재법
- 17)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건축법 제76조 2항
- 18)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2항
- 19) 민법 제390조
- 20) 김형배, 前掲書, P693
- 21) 민법 제 162조
- 22) 대판 1980.11.11 「80다923」
- 2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 24) 민법 제 750조
- 25) 대판 1983.3.22 「82다카1533」
- 26) 김준호, 前掲書, P1115 / 김형배, 前掲書, P1185
- 27) 대판 1999.2.12 「98다10472」, 대판 1995.12.5 「94다 57701」
- 28) 대판 1993.7.27 「93다357」

29) 대판 1998.10.20 「98다31691」

30) 대판 1997.12.12 「96다50896」

후 기

1. 본 고는 2003.2.19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회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 수록한 것입니다
2. 본 논문은 SEWC2002 Conference를 위해 준비한 자료로서 2002.1.1 현재 시행중인 대한민국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원문이 외국인을 위한 것으로 번역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부분도 있습니다.
4. 영문 원본은 2003.2.19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세미나 논문집 또는 SEWC2002 Conference Proceedings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